

#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안 번호	2819
----------	------

제출일자 : 2026. 3. 25.

제출자 : 달성군수



## 1. 제안사유

우리군 20-0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과 관련하여 「203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2025.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므로 의회 의견청취 후 대구광역시에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하고자 함.

## 2. 추진경위 및 향후 계획

- 2018. 12. 31. : 정비예정구역 지정 고시(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2020.12.31.)
- 2024. 03. 11. : 정비예정구역 해제기한 연장 요청(2023.12.5.)에 따른 연장고시
- 2026. 01. 27. ~ 2026. 02. 26.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에 대한 주민공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3항
- 2026. 01. 30.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안내(공문발송)
- 2026. 4월 : 군의회 의견청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4항
- 2026. 상반기 :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郡→市) 예정
  -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해제 여부 결정 예정
  - ※ 차기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에 따라 재지정 가능
- 2026. 상반기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고시 예정

### 3. 주요내용

- 구역명 : 달성군-20-06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 위치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 117번지 일원
- 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
- 해제사유 :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및 연장된 날(2025.12.31.)까지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정비예정구역 해제조서

구분	구역번호	위 치	구역면적 (㎡)	사업유형	고시일	비고
기정	달성군-20-06	화원읍 천내리 117번지 일원	13,687	재건축	2018.12.31.	천내보성
변경	해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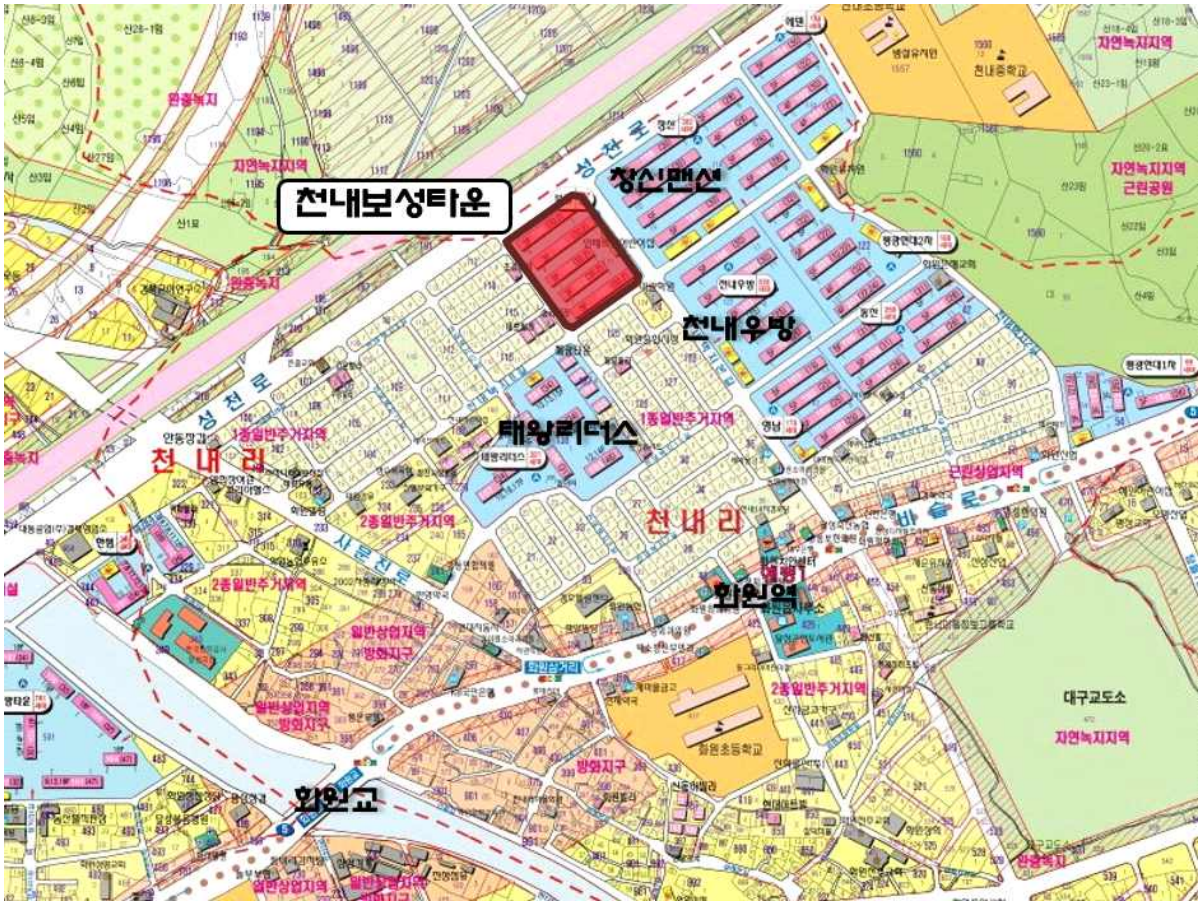
### 4. 주민 의견청취

- 기 간 : 2026. 1. 27. ~ 2026. 2. 26.(31일간)
- 장 소 : 달성군 건축과
- 공람내용 :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 청취결과 : 제출의견 없음

### 5.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 6. 위치도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0조(정비구역등의 해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 까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구청장등이 정비구역의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구청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은 제3항에 따른 주민공람을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관한 계획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받거나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도시재정비위원회(이하 “도시재정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정비구역등의 토지등소유자(조합을 설립한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한다)가 100분의 30 이상의 동의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당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2.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주거환경의 계획적 정비 등을 위하여 정비구역등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⑦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제6항에 따라 해제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사실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